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9. 2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0. 12(제17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보류

【2009. 12. 18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송도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 및 주변 컨벤션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송도 컨벤시아의 임대료 감면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대료 감면행사 대상 범위를 인천광역시 주최·주관행사에서 송도 컨벤시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안 제5조)
- 전시장 임대료 감면 및 할인 범위 확대(안 별표 1)
 - 전시장 면적표기에 있어 설계면적(벽 중심선분의 면적)과 유효면적(기둥이나 벽면 미포함)의 혼란방지를 위해 표기 삭제
 - 전시장의 기본관리비(200원/m²)를 기본임대료에 통합하여 징수
 - 기간별 차등률 규정을 신성하여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50% 할인(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 행사에 한함)
 - 행사 개최와 관련한 시설의 장치 및 철거시 1일 4시간을 무료제공 토록 시간외 임대료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송도컨벤시아가 가동율 저하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료 감면 범위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유치하여 송도컨벤시아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천의 전시·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임.

임대료 감면행사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송도컨벤시아의 임대료 감면범위를 “인천광역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서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 이는 그 동안 市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이외에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의 문화, 관광, 이벤트 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인천시 주최·주관행사 임대료 감면 현황 : 「붙임」

- 현재 개관초기이기는 하나, 송도컨벤시아의 전시장 가동률은 40.2%로 수도권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코엑스나 킨텍스에 비해 가동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컨벤시아의 수익구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 컨벤션센터 전시장 가동율 현황>

| 구 분 | 수 도 권 | | | 기 타 지 역 | | | |
|--------|--------------|----------------|--------------|---------------|--------------|---------------|--------------|
| | COEX (서울) | KINTEX (고양) | 컨벤시아 (인천) | BEXCO (부산) | EXCO (대구) | KDJ센터 (광주) | CECO (창원) |
| 가동율(%) | 62.2 | 53.8 | 40.2 | 60 | 72.1 | 63.2 | 48.6 |

<출처 : 관광진흥과, 타시도 컨벤션센터 2007년 기준, 송도컨벤시아 2009년 기준>

- 또한,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임대료는 각 센터별 특성 및 정책에 따라 책정되었으나, 임대료 할인은 송도컨벤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별 차등할인 등 이외에도 사장의 권한으로 추가할인을 시행하고 있어 송도컨벤시아가 他 시·도 컨벤션센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 컨벤션센터 전시장 임대료 현황>

(단위 : 원/m², 일)

| 구 분 | 수 도 권 | | | 기 타 지 역 | | | |
|------------|--------------|----------------|--------------|---------------|--------------|---------------|--------------|
| | COEX (서울) | KINTEX (고양) | 컨벤시아 (인천) | BEXCO (부산) | EXCO (대구) | KDJ센터 (광주) | CECO (창원) |
| 전시장 임대료 | 1,600 | 1,500 | 1,200 | 1,000 | 1,000 | 1,000 | 1,200 |

<주요 컨벤션센터 전시장 임대료 할인정책>

| 구 분 | 할 인 정 책 | | | | 비고 |
|----------------|-----------------------------|--------------|------------|--|----|
| | 계절할인 | 기간할인 | 추가할인 | 기타 정책(장기이벤트행사) | |
| COEX (서울) | 30%(1,12월) 20%(2,7,8월) | 없음 | 사장전결 | - 할인율 행사별 협의 | |
| KINTEX (고양) | 30% (1,2,7,8,12월) | 없음 | 사장전결 | - 임차료 무상 제공, 사후 입장료수입으로 대체 - 장기 이벤트 m ² 당 단가 1,500원 → 900원 (40% 할인) 조정 중 | |
| BEXCO (부산) | 40%(7,8월) 30%(1,2,3,12월) | 없음 | 사장전결 | - 할인율은 행사별 협의 | |
| EXCO (대구) | 40%(7,8월) 30%(1,2,12월) | 60일이상 50% | 사장전결 | - 임차료 무상 제공, 사후 입장료수입으로 대체 - 할인율은 행사별 협의 | |
| KDJ센터 (광주) | 40%(7,8월) 30%(1,2,12월) | 없음 | 사장전결 | - 임차료 무상 제공, 사후 입장료수입으로 대체 - 타도시 인구비율을 고려해 추가 할인 | |
| CECO (창원) | 80%(3월) 50%(1,2,7,8,12월) | 50일이상 40% | 위탁사장 전결 | - 계절 할인 및 기간 할인 (중복할인 가능) | |
| 송도 컨벤시아 | 40%(7,8월) 30%(1,2,12월) | 없음 | 없음 | - 계절 할인 및 규모 할인 (중복할인 불가) | |

○ 이에, 송도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국제전시 및 국제회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많이 유치함으로써 송도 컨벤시아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전시장 임대료 감면 및 할인범위 확대 등 (안 별표 1)

- [별표 1]에서는 전시장의 면적표기를 삭제하였고, 1층 전시장의 임대료를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30일 이상 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50%를 할인하는 기간별 차등율을 신설하였음.
- 전시장 면적표기 삭제는 현행 조례상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에서 전시장의 면적을 8,503m²으로 표기하였으나,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에서는 제1, 제2전시장의 면적을 각각 4,208m²로 표기하여 87m²의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면적과 유효면적간의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 1층 전시장의 임대료를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본관리비 200원을 임대료에 포함한 것으로 실질적 인상은 없음.

한편, 동 규정 별표의 기본관리비 200원은 옥내·외 전시장 임차시 m²당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1층 전시장 임대료에는 포함시킨 반면, 옥외전시장 임대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1층 전시장과 같이 옥외전시장의 기본관리비를 반영하면 이용자의 임대료 납부에 대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별표 제1-2호]>

| 구 분 | 단 위 | 요 율 | 비 고 |
|-------|--------------------|------|------------|
| 기본관리비 | m ² , 일 | 200원 | 옥내외 전시장 포함 |

※ [별표 제1-2호]의 “기본관리비 및 제사용료” 중 기본관리비 부분만 발체

「붙임」

인천시 주최·주관행사 임대료 감면 현황

○ 전시 부분

| 년도 | 행사명 | 행사기간 | 정상임대료 | 감면금액 | 납부금액 | 비고 |
|------|----------------|---------------|--------------------|-------------------|-------------------|---------------|
| | 합계 | | 126,240,000 | 81,046,080 | 45,193,920 | |
| 2008 | 2008. 인천환경기술전 | 9.27 ~ 10.3 | 58,912,000 | 19,440,960 | 39,471,040 | 기본임대료 50% 감면 |
| 2009 | 2009. 인천부동산박람회 | 4.14 ~ 4.19 | 50,496,000 | 50,496,000 | 0 | 전액감면 |
| | 인천시민의날 행사 | 10.14 ~ 10.15 | 16,832,000 | 11,109,120 | 5,722,880 | 기본임대료 100% 감면 |

○ 컨벤션 부분

| 년도 | 행사명 | 행사기간 | 정상임대료 | 감면금액 | 납부금액 | 비고 |
|------|-------------------------------|---------|--------------------|--------------------|-------------------|----|
| | 계 | | 142,161,300 | 127,461,300 | 14,700,000 | |
| 2009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교육 | 1.21~22 | 53,216,000 | 50,496,000 | 2,720,000 | |
| | 2009인천투자유치FAIR | 4.16~18 | 14,294,150 | 12,894,150 | 1,400,000 | |
| |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한 열린 미래 교육 | 6.18 | 18,995,350 | 16,795,350 | 2,200,000 | |
| | 국방대학원생 대상 시장님 특강 | 6.24 | 4,626,500 | 3,646,500 | 980,000 | |
| |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협력업체 만남의 날 | 7.16 | 12,357,800 | 12,097,800 | 260,000 | |
| | 2010.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설명회 | 7.16 | 4,223,000 | 3,003,000 | 1,220,000 | |
| |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자 교육 | 7.17 | 10,729,000 | 9,009,000 | 1,720,000 | |
| | 사회복지사한마음다짐대회 | 7.23 | 5,904,500 | 4504500 | 1,400,000 | |
| |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자 교육 | 7.24 | 10,729,000 | 9,009,000 | 1,720,000 | |
| | 경제위기극복 100만명특강 | 8.26 | 7,086,000 | 6,006,000 | 1,080,000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6. 수정안 요지

- [별표 1] 중 옥외전시장 임대료 “1일 400원/m²”를 “1일 600원/m²”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 중 옥외전시장 임대료 “1일 400원/m²”를 “1일 600원/m²”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전시장 임대료</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옥외전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원/m²</td> <td></td> </tr> </tbody> </table> <p>※ 옥외전시장 임대료 부분만 발취</p> | 구분 | 임대료 | 비고 | 옥외전시장 | 400원/m ² | |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전시장 임대료</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옥외전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 400원/m²</td> <td></td> </tr> </tbody> </table> <p>※ 옥외전시장 임대료 부분만 발취</p> | 구분 | 임대료 | 비고 | 옥외전시장 | 1일 400원/m ² | |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전시장 임대료</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대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옥외전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 600원/m²</td> <td></td> </tr> </tbody> </table> <p>※ 옥외전시장 임대료 부분만 발취</p> | 구분 | 임대료 | 비고 | 옥외전시장 | 1일 600원/m ² | |
| 구분 | 임대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옥외전시장 | 400원/m ²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임대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옥외전시장 | 1일 400원/m ²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임대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옥외전시장 | 1일 600원/m ²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를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 구 분 | | 임 대 료 | 비 고 | |
|------------|--|---|--|---|
| 장소별 | 1층 | 전시장 | 1일 1,400원/㎡ 08:00~20:00기준 (기본관리비 포함) | |
| | 옥외전시장 | | 1일 600원/㎡ | |
| 할인 할증률 | 월별 차등률 | 12월, 1월, 2월 | 30% 할인 | |
| | | 7월, 8월 | 40% 할인 | |
| | 규모별 차등률 | 전체 사용시 | 10% 할인 | 월별, 규모별,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
| | | 1개실 중 일부 사용시 | 20% 할증 | |
| | 기간별 차등률 |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1월,2월,7월,8월에 한함) | 50% 할인 | |
| 시간외 임대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장치 및 철거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 | |
|---|--|---------------------------|-----------------------|--|-----|-----------------|---|-------------|---|---|--------|--------|
| 제5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 | 제5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 | | | | | |
| [별표 1] <b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 임대료 (단위 : 원/m ² · 일) | | | | [별표 1] <b style="text-align: center;">전시장 임대료 | | | | | | | | |
| 구 분 | | 임 대 료 | 비 고 | | 구 분 | | 임 대 료 | 비 고 | | | | |
| 장소별 | 1층 | 전시장(8,503m ²) | 1,200원/m ² | 08:00~20:00 기준 | | 장소별 | 1층 | 전시장 | 1일 1,400원/m ² | 08:00~20:00기준 (기본관리비 포함) | | |
| | 옥외전시장 | | 400원/m ² | | | | 옥외전시장 | | 1일 600원/m ² | | | |
| 할인 할증률 | 월별 차등률 | 12, 1, 2월 | 30% 할인 | 월별, 규모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 | 할인 할증률 | 월별 차등률 | 12월, 1월, 2월 | 30% 할인 | 월별, 규모별,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 | |
| | | 7, 8월 | 40% 할인 | | | | | 7월, 8월 | 40% 할인 | | | |
| | 규모별 차등률 | 전체 사용시 | 10% 할인 | | | 1개실 중 일부 사용시 | 20% 할증 | 규모별 차등률 | 전체 사용시 | | 10% 할인 | 20% 할증 |
| | | | | | | | | |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1월,2월,7월,8월에 한함) | | 50% 할인 | |
| 시간외 임대료 |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단,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 | 시간외 임대료 | | | ·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 (08:00~20:00) 1일 임대료의 10% 가산 다만, 시설장치 및 철거기간 중 1일당 4시간을 무료제공(이월사용 불가) ·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 | | | | |